# **Deloitte.**



2025.07 | 제5호

#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규제동향을 담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Ⅰ.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4
  - **1** 서론 4
  -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6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8
  - 4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11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15
  - 6 결언 30
  - ⑦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1-2025) 31
- Ⅱ.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33
  -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33
  - ②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38
  - ③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44
  - ④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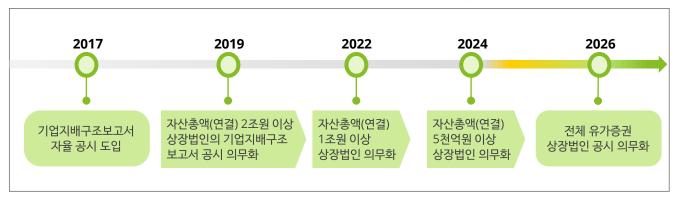
## 요약

- □ 2024년부터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에 따라, 본고는 2024 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부문 제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을 파악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 □ 2025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54.6%로 전기대비 5.1%p 상승하였으며, 자산 규모별로도 전반적인 개선세가 있었으나 여전히 성실한 준수가 권고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25.4%p↑)' 및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9.7%p↑)' 등의 항목에서 전기 대비 괄목할 수준의 개선이 나타났으며, '집중투표제 채택(3.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13.5%)'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보임
- □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은 핵심지표의 이행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공시 및 내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1. 서론

- □ 2024년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의무공시는 단계적으로 2024년 자산(연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임

#### <그림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일정



#### 1. 서론

- □ 본고는 2024 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부문 제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개괄적인 지배구조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함 1)
  - 핵심지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영역에 대해 1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자,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및 책임투자의 판단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그 이행 여부는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 볼 수 있음
-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관련 아래의 공시 항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센터 고유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❷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③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᠑ 집중투표제 채택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❷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❸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

0

감 사 기 구

1) 본고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공시된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며,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을 수록함. 공시 자료는 <u>'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u>'에서 확인함

##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 2023년 10월 발표된 제3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확대에 맞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하기의 6가지 항목(<표1>참조)에 대한 공시 권고사항이 추가됨 <sup>2), 3)</sup>
  - 해당 개정은 배당절차 개선 등 정부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 개정 수요 및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2023.10) <sup>6)</sup>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구분	내용
신규핵심지표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 배당절차 개선방안('23.01.) 후속 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
	•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
소액 <del>주주</del> , 기관 투자자 소통 강화	<ul> <li>경영진이소액주주,기관투자자와소통한 내역,외국인 주주를 위한소통채널 확대 등신설</li> <li>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li> </ul>
자본조달 현황 기술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
신규핵심지표 이사회의 다양성	• 다양한 성·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 강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 설명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

- □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핵심지표 체계를 재정비하여 총 15개 항목으로 확정했고,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규 지표로 지정됨(<표 2> 참조)
  - 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항목은 삭제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흐름 등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은 정비됨
- □ 기존에는 단순 기술 형식으로 공시항목을 서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공시의 명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각 원칙별로 '준수 여부'를 10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하고, 세부원칙 준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부정책 시행여부를 'O/X'로 표시하도록 보고서 체계가 개편됨

<sup>2)</sup>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3

<sup>3) 2024</sup>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됨

####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표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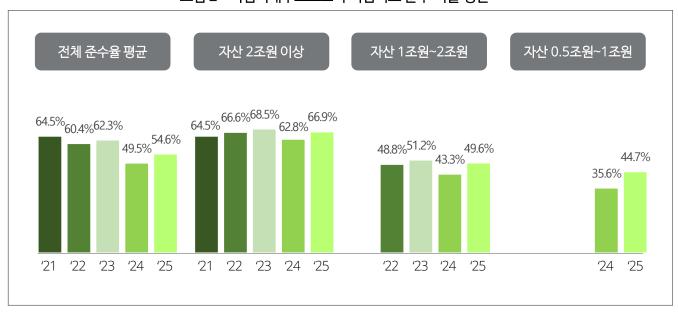
구분	2차개정가이드라인(2022.03)		3차개정가이드라인(2023.10)	개정사항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변동없음
	② 전자투표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변동없음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주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변동없음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주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신규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선임정책포함 마련 및 운영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순서변경: ④→⑤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선임정책포함마련 및 운영	순서변경: ⑤→⑥
0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이 사 회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4)	순서변경: ⑥→⑦
사 회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sup>5)</sup>	순서변경: ⑦→®
	③ 기업가치 훼손 또는 <del>주주</del>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⑨ 집중투표제 채택	순서변경: ®→9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순서변경: ⑨ <b>→</b> ⑩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신규
	② 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지원조직)의설치		② 독립적인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지원조직)의설치	변동없음
감사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감 사 기 구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변동없음
기 구	④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회의 개최		④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회의 개최	변동없음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변동없음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 2025년 기준 금융부문을 제외한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54.6%로, 전기 대비 5.1%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성실한 준수가 권고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66.9%로 전기 대비 4.1%p 상승함
  - 자산 1조원~2조원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49.6%로 전기 대비 6.3%p 상승함
  - 작년부터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천억원~1조원 상장법인의 경우 핵심지표 준수율은 44.7%로 전기 대비 9.1%p 상승함
- □ 2024 회계연도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시행 2년차로, 2023년에 도입된 3차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등의 항목에서 전기 대비 괄목한 수준의 준수율 개선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준수 수준도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집중투표제 채택(3.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13.5%)'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보임

#### <그림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비율 평균 6



<sup>6)</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5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미만

□ 2025년 기준, 하기의 7개 핵심지표는 평균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임

####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50% 미만<sup>7)</sup>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핵심지표 중 최저 수준의 준수율로 사실상 거의 준수되지 않고 있음
-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 내 부담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설계로서 권고되지만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임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함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준수율이 미흡한 수준임
- 후보군 선정기준, 비상시 선임절차 등 승계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다수의 기업이 법정 의무기간(2주) 8)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함

### 25<sup>년 중점점검사망</sup>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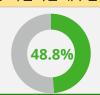
- 핵심지표로 지정된 지 2년차로, 전기 대비 대폭(25.4%p) 개선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주주와의 소통 및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여전히 다수의 기업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5<sup>년 중점점점</sup>(2) ②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8) 상법 제363조 9

<sup>7)</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3.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 2025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60% 이상

□ 2025년 기준, 하기의 6개 핵심지표는 평균 준수율이 60% 이상으로,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60% 이상 9)

####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명문화되어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 상법 제542의11에 따라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모두 해당사항을 충족함

#### ② 전자투표 실시



• 전자투표의 도입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낮추고,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함

## 25<sup>년 중점점검사병</sup>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 최근의 자금부정통제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이행 등 제도적 강화 흐름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관련 대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정책의 명문화가 요구되며, 주요 미준수 사유는 주로 위험관리 항목의 정책 미비에 기인함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고, 주총 참여율 제고를 통해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있음

## ·25년 <sup>중점심고</sup> ④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되며 전기 대비 9.4%p 상승하여 괄목한 수준의 개선세를 보임

<sup>9)</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4.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기재 충실도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중점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하며, 2025년 중점점검사항으로,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사항 1개를 포함한 총 10개 항목이 선정됨
  -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미흡한 공시 항목 및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정책과 연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 <표 5>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10)

구분	중점점검사항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4개 항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 ⑭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 1-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③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세부원칙 * (5개 항목)	• 3-③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3.11.0.1)	• 9-①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 10-②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기타사항 (1개 항목)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sup>\*</sup>주주권리보호절차적절성,이사회운영의효율성및사외이사독립성,감사의전문성-독립성에관한한국거래소의기업지배구조 10대원칙반영

#### 4.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중점점검사항별 주요 점검 내용 및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표 6>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및 작성기준 11), 12)

#### I.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 4, 세부원칙 1-④)

-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여부 및 현금배당 시 배당금 확정·공시 시점 등 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
- 예측가능성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 명시

#### II.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세부원칙 2-③)

-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분할 등 추진 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절차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정한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 기재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합병·분할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주주보호정책에 따른 시행 내용 확인

#### Ⅲ.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핵심지표 7, 세부원칙 3-③)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정책의 명문화 여부, 그 내용 및 실제 운영현황 기재 여부
- 제시된 리스크관리 정책이 단편적 ·지엽적 정책이 아닌 전사적 위험관리 정책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

#### IV.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핵심지표 12, 세부원칙 9-①)

-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현황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명시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및 구성원 전원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인사조치 권한 보유 여부 또는 최소한 동의권의 보유 여부 등 세부적인 독립성 확보 방법 기술 확인

#### V.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핵심지표14, 세부원칙10-②)

-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가 공시 대상기간 내에 분기별 1회 이상 진행되었는지 기재
- 회의가 대면 또는 화상 등 실질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기재 (경영진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시 불인정)

#### VI.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기타사항)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뿐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기재 여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였는지 여부

<sup>11)</sup> 한국거래소,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02.14 12) 한국거래소, 「'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 ,, 2025.02.26

#### 4.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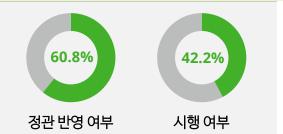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준수 현황

□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10개 항목의 준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운영' 항목은 높은 준수율을 보이며, '소유·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은 저조한 준수율이 나타남

#### <표 7>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준수 현황 13),14)

#### 1.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핵심지표 4, 세부원칙 1-④)

• 정관 개정 및 실제 현금배당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사항을 정관에 반영(60.8%)은 하였으나 실제 시행(42.2%)까지는 이어지지 못함

#### Ⅱ.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세부원칙 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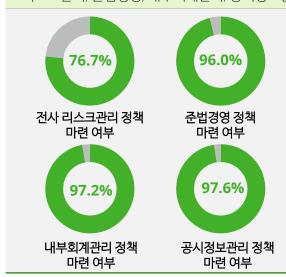
- 합병·분할 등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경 시, 반대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 기재 여부
- · 공시기간 중 합병·분할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주주보호정책에 따른 조치 내용 확인



•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 및 합병·분할 등이 있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절차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 등 시행한 내용이나 계획 기재에 대한 준수 현황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Ⅲ.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핵심지표 7, 세부원칙 3-③)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정책의 명문화 여부, 그 내용 및 실제 운영현황 기재 여부



• 개괄적 차원에서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 <표 7>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준수 현황 (계속) 15), 16)

#### Ⅳ.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핵심지표 12, 세부원칙 9-①)

•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설치 현황, 독립성 확보 관련 기재 여부



• 다수 기업이 내부감사부서(지원조직)를 설치하였으나, 실효적인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임

#### V.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핵심지표14, 세부원칙1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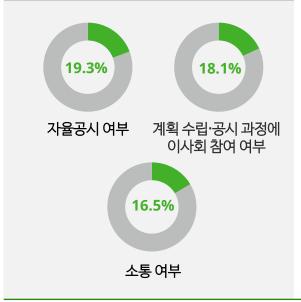
•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가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는지 기재 여부



•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VI.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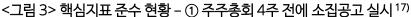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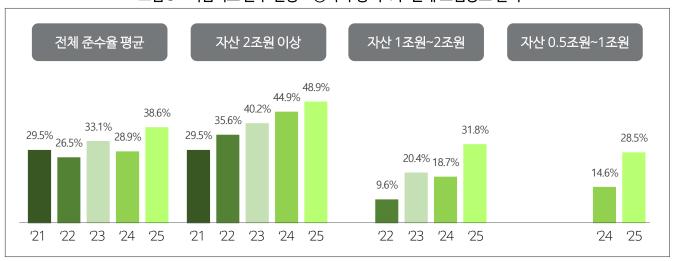


•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8.6%로 전기 대비 9.7%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8.9%로 전기 대비 4.0%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1.8%로 전기 대비 13.1%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8.5%로 전기 대비 13.9%p 증가함
- □ 다수의 기업이 상법 제363조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공시하고 있음

#### <표 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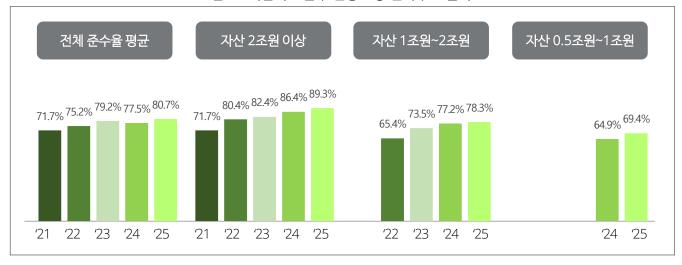
-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세부원칙 1- 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나. 회사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sup>17)</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 <그림 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② 전자투표 실시 18)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80.7%로 전기 대비 3.2%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9.3%로 전기 대비 2.9%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8.3%로 전기 대비 1.1%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9.4%로 전기 대비 4.5%p 증가함
- □ 2020년 개정된 상법은 <sup>19)</sup>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확대한 기업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전자투표의 도입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낮추고,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함

#### <표 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②)

-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 개시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전자투표 실시여부 포함)
  - 다. 회사가 <del>주주총</del>회 등 의사결정에 <del>주주</del>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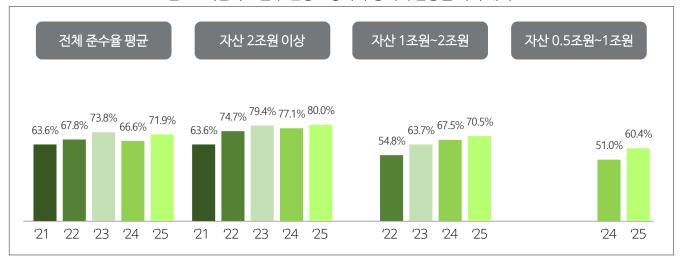
<sup>18)</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sup>19)</sup> 상법 제368의 4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그림 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20)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1.9%로 전기 대비 5.3%p 증가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0.0%로 전기 대비 2.9%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0.5%로 전기 대비 3.0%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4%로 전기 대비 9.4%p 대폭 상승함
- □ 주주총회 집중일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표하며, 해당일에 개최 시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 다수 기업이 동일 일자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소액주주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면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는 것이 권장됨
- □ 기업들이 주주총회 분산 개최 원칙을 실제 실행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확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표 1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②)

-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 (1) 최근 3 개시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전자투표 실시여부 포함)
  - 다. 회사가 <del>주주총</del>회 등 의사결정에 <del>주주</del>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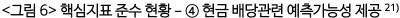
<sup>20)</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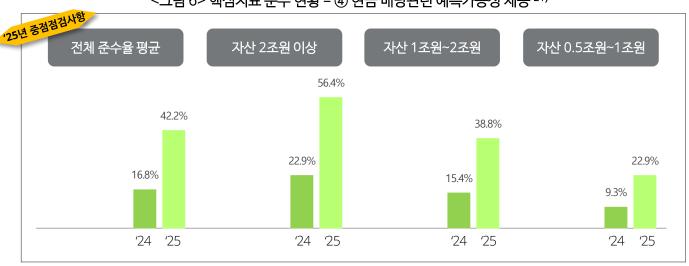
18

## 1.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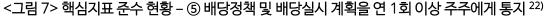
- □ 해당 지표는 '25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2.2%로 전기 대비 25.4%p 대폭 증가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6.4%로 전기 대비 33.5%p 대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8.8%로 전기 대비 23.4%p 대폭 증가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2.9%로 전기 대비 13.6%p 대폭 상승함
- □ 신규 핵심지표로 지정된 지 2년차로, 전기 대비 큰 폭(25.4%p)의 개선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준수율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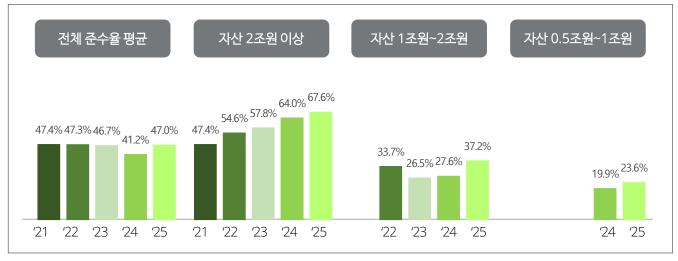
#### <표 1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 ④)

-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세부원칙 1- 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여부
    -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했는지 여부(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실시 여부 포함)
- 2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7.0%로 전기 대비 5.8%p 증가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7.6%로 전기 대비 3.6%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7.2%로 전기 대비 9.6%p 대폭 증가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3.6%로 전기 대비 3.7%p 상승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주주와의 소통 및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나, 여전히 다수의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표 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세부원칙 1-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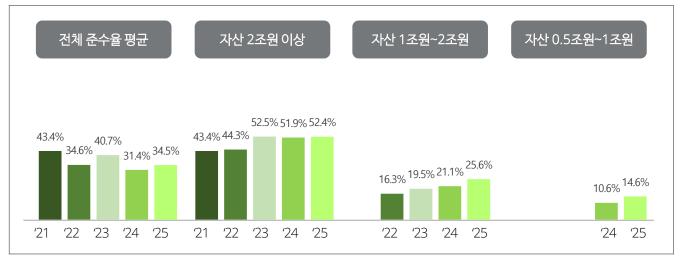
-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세부원칙 1 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1) 배당관련 사항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나.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sup>22)</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그림 8>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23)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4.5%로 전기 대비 3.1%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2.4%로 전기 대비 0.5%p 소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5.6%로 전기 대비 4.5%p 증가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4.6%로 전기 대비 4.0%p 상승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준수율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규모 기업의 대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후보군 선정기준, 비상시 선임절차 등 승계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②)

-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 (세부원칙 3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연임 정책 포함)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 (2)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 (4) 공시대상기간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시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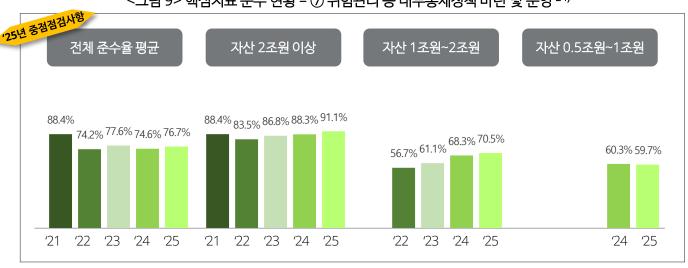
20

<sup>23)</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구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그림 9>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24)



- □ 해당 지표는 '25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76.7%로 전기 대비 2.1%p 증가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1.1%로 전기 대비 2.8%p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0.5%로 전기 대비 2.2%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9.7%로 전기 대비 0.6%p 소폭 하락함
- □ 최근의 자금부정통제 공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이행 등 제도적 강화 흐름에 따라 상장법인들의 관련 대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정책의 명문화가 요구되며, 주요 미준수 사유는 주로 위험관리 항목의 정책 미비에 기인함

#### <표 1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 - ③)

-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 (세부원칙 3 ③)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내부통제정책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 (2)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 (3)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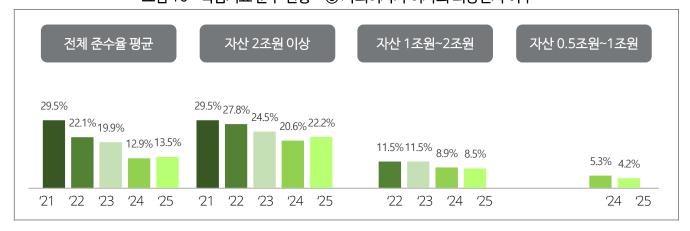
21

<sup>24)</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그림 10>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sup>25)</sup>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13.5%로 전기 대비 0.6%p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2.2%로 전기 대비 1.6%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5%로 전기 대비 0.4%p 소폭 하락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2%로 전기 대비 1.1%p 감소함
-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sup>26</sup>,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중심인지 또는 전략적 협조 및 효율성을 중시하는지 등 운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미분리 시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이 권고되며,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선임되어 의장에 준하는 권한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과 이사회의 독립성·기능 강화를 지원함
- □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완책으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해당 원칙의 준수율은 정체되어 있어 이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이행 노력이 요구됨

#### <표 1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①)

-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4 ①)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 (6) 선임(先任)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sup>25)</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22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그림 11>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⑨ 집중투표제 채택 <sup>27)</sup>



- □ 집중투표제 28) 채택'은 15개 핵심지표 중 전체 준수율 평균(3.2%)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남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3.2%로 전기 대비 0.1%p 소폭 하락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9%로 전기 대비 0.2%p 소폭 상승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6%로 전기와 동일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1%로 전기 대비 0.5%p 소폭 감소함
- □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며,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 반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 □ 대다수 기업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영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 내 부담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③)

-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4 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 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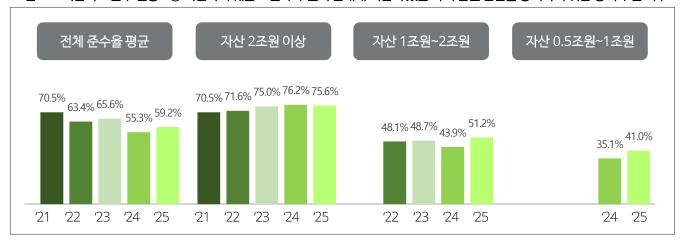
<sup>27)</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sup>28)</sup> 상법 제382의2.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존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여부

<그림 12>핵심지표준수현황-⑩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익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sup>29</sup>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9.2%로 전기 대비 3.9%p 상승하여 개선세를 보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5.6%로 전기 대비 0.6%p 소폭 감소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2%로 전기 대비 7.3%p 증가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1.0%로 전기 대비 5.9%p 상승함
-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지표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준수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 관련 위험요소로는 법규위반 등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사업적 제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거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발생 시 경영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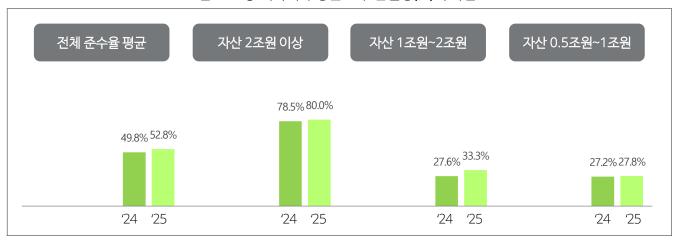
#### <표 17>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④)

- □ (핵심원칙4)이사회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4 ④)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del>주주</del>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이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3) 기업가치의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29)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 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그림 13>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30)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52.8%로 전기 대비 3.0%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0.0%로 전기 대비 1.5%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3.3%로 전기 대비 5.7%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27.8%로 전기 대비 0.6%p 소폭 증가함
- □ 신규 핵심지표로 지정된 지 2년차로 여성 이사진 비중 확보에 대한 충실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군을 중심으로 여성 이사 선임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법인에서는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보임
- 지본시장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20.0%, 개별·별도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5.0%가 여전히 단일성 이사회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표 18>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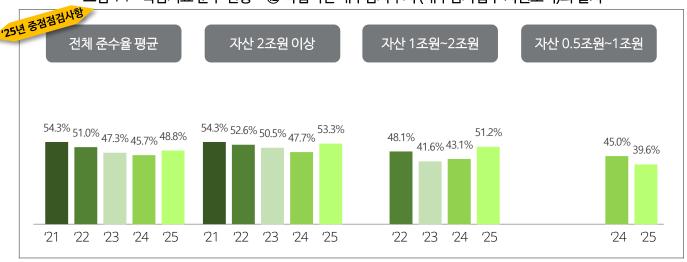
- □ (핵심원칙4)이사회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4 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 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sup>30)</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그림 14>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31)



- □ 해당 지표는 '25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48.8%로 전기 대비 3.1%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3.3%로 전기 대비 5.6%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1.2%로 전기 대비 8.1%p 대폭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9.6%로 전기 대비 5.4%p 하락함
- □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되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임 <sup>32)</sup>
- □ 내부감사부서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책임자 및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하거나 최소한 동의권을 보유한 경우에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지표가 '25년 중점점검사항임을 고려하면 준수율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표 1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9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법·내부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현황
    - (2) 내부감사기구지원조직의독립성확보여부(내부감사기구에게인사조치권이있거나최소한동의권등이있는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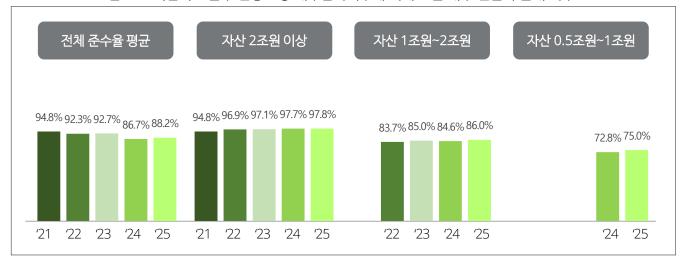
<sup>31)</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sup>32)</sup>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1 & 지배구조 모범규준 IV.1.4.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권장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그림 15>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33)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88.2%로 전기 대비 1.5%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7.8%로 전기 대비 0.1%p 소폭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6.0%로 전기 대비 1.4%p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75.0%로 전기 대비 2.2%p 증가함
- □ 상법 제542의11에 따라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상법시행령(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sup>34)</sup>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은 연결 자산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개별·별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최소 1명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함

#### <표 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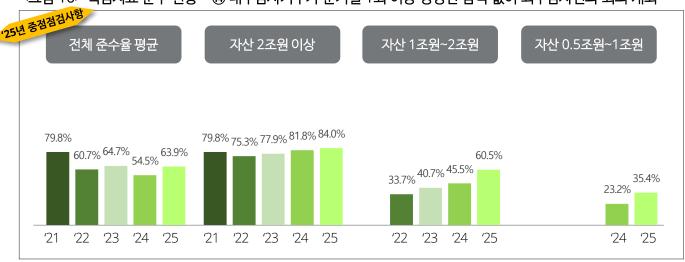
-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9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sup>33)</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34) 감사 설치 기업의 다수가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그림 16> 핵심지표 준수 현황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35)



- □ 해당 지표는 '25년 중점점검사항으로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63.9%로 전기 대비 9.4%p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84.0%로 전기 대비 2.2%p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5%로 전기 대비 15.0%p 대폭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5.4%로 전기 대비 12.2%p 대폭 증가함
-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회의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할 것이 권고됨 <sup>36)</sup>
  - 이를 통해 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표 2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세부원칙 10 - ②)

-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세부원칙 10 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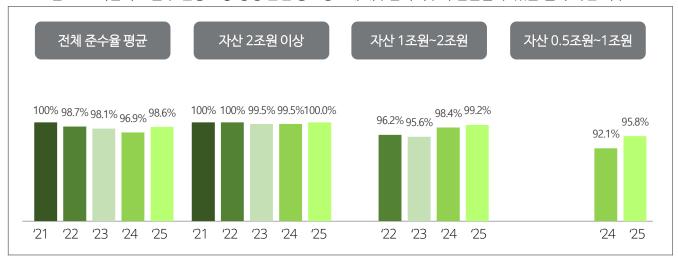
36)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sup>35)</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5.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그림 17> 핵심지표 준수 현황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37)



- □ 해당 지표는 15개 핵심지표 중 전체 준수율 평균(98.6%)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남
- □ 2025년 기준, 전체 준수율 평균은 98.6%로 전기 대비 1.7%p 상승함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100.0%로 전기 대비 0.5%p 소폭 증가함
  -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9.2%로 전기 대비 0.8%p 소폭 상승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95.8%로 전기 대비 3.7%p 상승함
-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상법 제412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내부규정 및 절차로 명문화하여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표 2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세부원칙 9 - ①)

-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 (세부원칙 9 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sup>37)</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구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구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 6. 결언

#### 결언

- □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2025년 자산총액(연결)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핵심지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함
  - 기업들이 자사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타사의 준수 수준과 비교 및 참조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핵심지표 준수 여부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도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 2025년 기준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평균 준수 비율은 54.6%로, 전기 대비 5.1%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성실한 준수가 권고되는 상황으로 나타남
  - 특히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25.4%p↑)',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9.7%p↑)' 등 일부 항목에서는 높은 개선폭이 나타난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3.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13.5%)' 등은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보이며 기업들의 도입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단순한 공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의 내실 있는 준비와 지배기구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
- □ 한국거래소는 매년 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기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배기구와 회사는 당해 중점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 운영 및 공시를 준비해야 할 것임
- □ 한편,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든 상장법인은 자사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수준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임

7.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1-2025)

#### <표 2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38)

구		2021년 2022년			2023년			
분	핵심지표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주주 주	①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5% 51사	26.5% 79사	35.6% 69사	9.6% 10사	33.1% 105사	40.2% 82사	20.4% 23사
	② 전자투표 실시	71.7% 124사	75.2% 224사	80.4% 156사	65.4% 68사	79.2% 251사	82.4% 168사	73.5% 83사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교사업 교육적검사항	63.6% 110사	67.8% 202사	74.7% 145사	54.8% 57사	73.8% 234사	79.4% 162사	63.7% 72사
	( <sup>경점점) 시</sup> (4)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⑤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배당정책・실시 계획 통지	47.4% 82사	47.3% 141사	54.6% 106사	33.7% 35사	46.7% 148사	57.8% 118사	26.5% 30사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선임정책포함) 마련·운영 <sup>현중점점검사항</sup>	43.4% 75사	34.6% 103사	44.3% 86사	16.3% 17사	40.7% 129사	52.5% 107사	19.5% 22사
이 사 회	<sup>ð</sup> 중점 □ □	88.4% 153사	74.2% 221사	83.5% 162사	56.7% 59사	77.6% 246사	86.8% 177사	61.1% 69사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29.5% 51사	22.1% 66사	27.8% 54사	11.5% 12사	19.9% 63사	24.5% 50사	11.5% 13사
	⑨ 집중투표제 채택	5.2% 9사	3.7% 11사	5.2% 10사	1.0% 1사	4.1% 13사	5.9% 12사	0.9% 1사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0.5% 122사	63.4% 189사	71.6% 139사	48.1% 50사	65.6% 208사	75.0% 153사	<b>48.7%</b> 55사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1% 161사	99.0% 295사	99.5% 193사	98.1% 102사	99.7% 316사	100% 204사	99.1% 112사
.2! .2!	(1) (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168사	89.9% 268사	97.4% 189사	76.0% 79사	91.5% 290사	97.5% 199사	80.5% 91사
25년 감사기기 25년	<sup>2</sup> 동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54.3% 94사	51.0% 152사	52.6% 102사	48.1% 50사	47.3% 150사	50.5% 103사	41.6% 47사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좋점절검사 <sup>항</sup>	94.8% 164사	92.3% 275사	96.9% 188사	83.7% 87사	92.7% 294사	97.1% 198사	85.0% 96사
251	(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9.8% 138사	60.7% 181사	75.3% 146사	33.7% 35사	64.7% 205사	77.9% 159사	40.7% 46사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 여부	100% 173사	98.7% 294사	100% 194사	96.2% 100사	98.1% 311사	99.5% 203사	95.6% 108사
	준수비율 평균	64.5%	60.4%	66.6%	48.8%	62.3%	68.5%	51.2%

<sup>38)</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고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고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31

7.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1-2025)

#### <표 2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계속) 39)

구			202	24년		2025년			
분	핵심기표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자산0.5조 ~1조	소계	자산2조 이상	자산1조 ~2조	자산0.5조 ~1조
주주 ~	①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8.9% 141사	44.9% 96사	18.7% 23사	14.6% 22사	38.6% 192사	48.9% 110사	31.8% 41사	28.5% 41사
	② 전자투표 실시	77.5% 378사	86.4% 185사	77.2% 95사	64.9% 98사	80.7% 402사	89.3% 201사	78.3% 101사	69.4% 100사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66.6% 325사	77.1% 165사	67.5% 83사	51% 77사	71.9% 358사	80.0% 180사	70.5% 91사	60.4% 87사
	년 중점점검사항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16.8% 82사	22.9% 49사	15.4% 19사	9.3% 14사	42.2% 210사	56.4% 127사	38.8% 50사	22.9% 33사
	⑤ 주주에게 연 1회 이상 배당정책 실시 계획통지	41.2% 201사	64% 137사	27.6% 34사	19.9% 30사	47.0% 234사	67.6% 152사	37.2% 48사	23.6% 34사
	⑥최고경영자승계정책(비상시선임정책포함)마련·운영 <sup>현중점점검사항</sup>	31.4% 153사	51.9% 111사	21.1% 26사	10.6% 16사	34.5% 172사	52.4% 118사	25.6% 33사	14.6% 21사
<sup>25</sup> 이 사 회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운영	74.6% 364사	88.3% 189사	68.3% 84사	60.3% 91사	76.7% 382사	91.1% 205사	70.5% 91사	59.7% 86사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2.9% 63사	20.6% 44사	8.9% 11사	5.3% 8사	13.5% 67사	22.2% 50사	8.5% 11사	4.2% 6사
	⑨ 집중투표제 채택	3.3% 16사	4.7% 10사	1.6% 2사	2.6% 4사	3.2% 16사	4.9% 11사	1.6% 2사	2.1% 3사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55.3% 270사	76.2% 163사	43.9% 54사	35.1% 53사	59.2% 295사	75.6% 170사	51.2% 66사	41.0% 59사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124	(四)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49.8% 243사	78.5% 168사	27.6% 34사	27.2% 41사	52.8% 263사	80.0% 180사	33.3% 43사	27.8% 40사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25kg	<sup>2</sup> 동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45.7% 223사	47.7% 102사	43.1% 53사	45% 68사	48.8% 243사	53.3% 120사	51.2% 66사	39.6% 57사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86.7% 423사	97.7% 209사	84.6% 104사	72.8% 110사	88.2% 439사	97.8% 220사	86.0% 111사	75.0% 108사
251	(생) 내부감사기구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54.5% 266사	81.8% 175사	45.5% 56사	23.2% 35사	63.9% 318사	84.0% 189사	60.5% 78사	35.4% 51사
	⑤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 마련 여부	96.9% 473사	99.5% 213사	98.4% 121사	92.1% 139사	98.6% 491사	100.0% 225사	99.2% 128사	95.8% 138사
	준수비율 평균	49.5%	62.8%	43.3%	35.6%	54.6%	66.9%	49.3%	44.7%

<sup>39)</sup>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98개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88개사, FY2022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317개사, FY2021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98개사, FY2020 기준 연결자산규모 2조 원 이상 173개사 (핵심지표 작성 제외 대상인 금융부문 상장법인은 미포함) 32



##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①



##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 요약

새 정부는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ESG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새 정부 정책 방향

기업경영 확산 등이 있음

- □ 새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공개함 1)
  -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새 정부는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자본·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ESG 기업경영 확산 등이 있음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11**



####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2)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규정 추가'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불발되었음 3)
- □ 새 정부는 '증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들이 주주이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표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 내용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sup>4)</sup>

- □ 회계기본법은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체계 마련 시 현장 인력 혼란을 줄이고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회계기준법이 제정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나 회계정보 공시 방법, 재무 정보 등 내용, 감독 기관까지 법령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됨

<sup>2)</sup>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③ 공정경제 11, 2025.05.28

<sup>3)</sup>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208496)

<sup>4)</sup>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③ 공정경제 9, 2025.05.28

<sup>5)</sup>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심포지엄 개최 1, 2024.12.04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11**



####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6)

- □ 새 정부는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 이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를 희생시키며 부당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임
- □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에 대해 일정 신주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쪼개기 상장을 통해 대주주가 이익을 얻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표 2>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내용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7)

- □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함
  -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임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1**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 <표 3> 공정한 시장질서 조정

#### 내용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우회 인수·차명 등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 방지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련 피해자 손실보상에 활용

#### ESG 기업경영 확산 8)

- □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 공약의 성장 기반 구축 카테고리에는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내용이 담겼음
  - 재생에너지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등의 내용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신속 추진'의 내용도 포함됨
  - 금융당국도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2025년에 시행하려 했으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함 9)
  -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ESG 공시 로드맵이 연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망

#### <표 4> ESG 기업경영 확산

#### 내용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 국민펀드 등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후기술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원 강화
-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책임 있는 투자 유도
  -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결과 공시
- EGS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 한국적 상황·산업별 특징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
  - 무늬만 녹색인 ESG워싱에 대한 규율 강화
-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 도입
  - 기후위기 대응계획,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주총회에서 표결대상 안건으로 상정

#### 시사점

- □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총주주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주주이익 환원을 강제할 것으로 기대됨
-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과 실무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함



#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②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요약

- □ 자본시장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며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등은 시장 신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②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③ 시장 효율성 제고의 3가지 방향에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함
- □ 주주 간 균형 재정립을 위해 (1) 유상증자 중점심사 도입, (2) M&A 제도 개선 (3)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4) 주주행동주의 문화 정착 유도 (5)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음
- □ 감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은 투명한 공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책임 있는 경영 실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내 자본시장 환경 변화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은 외형적으로 지속 성장하며,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짐
  - 특히, 개인투자자가 10년 전 대비 약 2.2배 증가하며 1,400만 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도 크게 높아짐 1)

#### <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 성장 현황

구분	2014년	2019년	2024년	2014년 대비
시가총액(조원)	1,335	1,717	2,303	72.5% †
개인투자자 수(만명)	437	612	1,410	223% †
금융투자회사 수(개)	144	348	554	285% ↑
금융투자회사 총자산(조원)	318	494	776	144% †

####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일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유상증자 등 중요 경영 사안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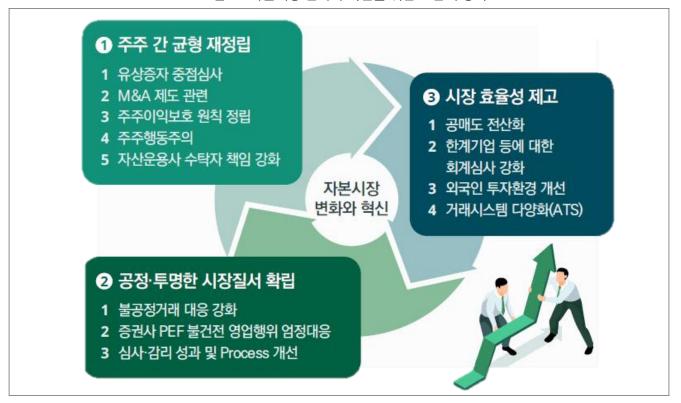
<그림 1>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심화

#### 자본시장 혁신 추진 성과 및 계획 <sup>2)</sup>

-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균형 재정립,
  - ❷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❸ 시장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진해 옴
  - (균형)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와 분배 측면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심사 제도 개선 및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투자자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질서) 검사·조사·수사·감리 등의 권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엄정 대응
  - (효율)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이 과정에서 열린 토론, 전문가 간담회, 해외 IR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적극 공유·협의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그림 2>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 유상증자 중점심사

- □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시 주주가치 영향 간과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함 <sup>3)</sup>
- □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임
  -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등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한 상황임

####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하여 중점심사 기준, 절차, 공시서식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할 예정임

#### M&A 제도 관련

- □ M&A 과정에서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었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및 이사회 공시 의무를 강화함 4)
- □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되며,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시 및 모회사 주주 보호노력 등 심사를 강화함 <sup>5)</sup>

#### <표 2> 합병 및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구분	기존	개선
합병 관련	• 경직된 합병규제*로 인한 M&A 시장 위축 및 주주간 이해상충 등 우려 *합병가액 획일적 규율(본질가치, 주가) 및 공시의 불충분성 등	<ul> <li>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자율화</li> <li>비계열사간 합병 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li> <li>상장사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li> </ul>
물적분할 관련	• 고성장 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단기간 내 상장으로 주주권 상실 및 주가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 발생	<ul> <li>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계획 시 관련 내용 공시</li> <li>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li> <li>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5년 내), 모회사 주주 보호노력 등 심사</li> </ul>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 합병가액을 자율화하고 외부평가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재 합병 및 물적분할 관련하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 회사와 주주 이익은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함 <sup>6)</sup>

#### <그림 3>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 상법 개정안

-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일반주주로 확대
-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등 모든 행위 포괄
- →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



#### 주주보호 원칙 본질은 동일

#### 자본시장법 개정안

- 이사충실의무를 주권상장법인의 일반주주로 확대
-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
-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화
- → 상장회사 특례를 통해 상장법인 임원에 적용

□ 입법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로 법안통과가 무산되었으며,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주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방안과 과도한 형사화 방지,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과 소송 리스크 보호장비 정비 등 보완이 필요함

#### <u>주주행동주의</u>

- □ 주주행동주의 활동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 및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국내 정기주총에서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법인 42사에 대해 121건의 주주제안을 하는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낮은 안건 가결률(12.4%), 소액주주 중심(61.4%)의 주주제안 등 아직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임
- □ 다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기업의 선제적 주주환원 노력이 증가하는 등 행동주의의 양태 및 기업의 대응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5건), 집중투표(11건)·전자투표(3건) 도입, 기업가치 제고계획 요구(3건) 등
  - 자사주 소각(조원): (2021년) 2.5 → (2022년) 3.1 → (2023년) 4.8 → (2024년) 13.9

####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 주주 이익과 기업의 장기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주주행동주의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활동과 주주총회 논의 내역이 공시서류를 통해 투명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기업·시장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임

#### 자산<del>운용</del>사 수탁자 책임 강화

- □ 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간 중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 91.6%, 6.8%로 전년(79.6%, 5.2%) 대비 개선 되었으나, 주요 연금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주요 연금 행사율·반대율: (국민연금) 99.6%, 20.8% (공무원연금) 97.8%, 8.9%
  -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sup>7)</sup>

####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 예정이며,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

업,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변화와 기업의 투명한 공시, 건전한 지배구조, 책임 경영	능
<del></del>	



#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③

#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요약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 고발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됨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지난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고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지난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증가함
금융감독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감리 방해행위를

#### 심사 · 감리 현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음 <sup>1)</sup>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음
  -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 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음
  - 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20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에서 2022년~20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a>3</a>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 <표 1> 연도별 심사·감리 현황

(단위: 사,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4년	2019년 ~2021년
심사·감리 합계		160	133	165	458	431
	심사*	136	113	130	379	273
	감리**	24	20	35	79	158
중조	치					
	과징금(건수)	17	15	20	52	63
	과징금(금액)	260	91	421	772	356
	검찰 고발·통보	6	7	9	22	26

- (심사) 공시자료 검토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 소명을 듣고, 경미한 위반(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권고하여 회사가 수용하면 경조치(금감원장 종결)
- (감리) 수정권고 불수용, 중조치, 제보 등 혐의사항은 감사인까지 위반 여부 검토

####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 □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되었고, 그 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 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되므로,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음 <sup>2)</sup>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a>3</a>



####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 □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되었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됨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 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함 <sup>3)</sup>

####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왔으며, 20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고 20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함
- □ 20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됨

#### <표 2>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사)

	구분	2025년 5월	2024년 9월	2024년 5월	2023년 11월	2022년 6월	2021년 12월	2021년 6월	2020년 8월	2019년 12월	합계
	조치시기	2024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 2019년	2015~ 2017년	2011~ 2014년	2011~ 2024년 하반기
	매출·매출원가	4	2	6	3	4	4	5	12	4	44
지	투자주식	1	4	-	4	3	4	5	6	4	31
적 유	재고·유형자산	-	2	2	3	3	-	1	5	7	23
형	기타자산·부채	7	4	4	5	2	8	2	5	7	44
	주석미기재등	2	1	2	3	3	11	2	9	7	40
지	적사례 수 (합계)	14	13	14	18	15	27	15	37	29	182

####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 □ 공개된 주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함
  -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함

#### <표 3> 증선위·금융위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IPO 예정기업	<ul> <li>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함</li> <li>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함</li> </ul>
현장조사	<ul> <li>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함</li> <li>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됨</li> </ul>
한계기업	<ul> <li>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기업에 대하여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할수 있도록 함</li> <li>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li> </ul>
과징금	<ul> <li>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161억원) 부과함</li> <li>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li> <li>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li> </ul>
테마심사	<ul> <li>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을 유도함</li> <li>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해야 함</li> <li>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 자산을 인도해야 할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함</li> </ul>

# II.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a>3</a>



####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 외부감사·감리 방해 개요

- □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 □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함
  - 감리를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 🏽 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와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벌칙(회사와 동일) 및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이뤄짐

#### <표 4>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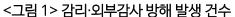
구분	내용	근거규정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감사법(제42조)
행정조치 (회사)	MAX(회계위반 조치 1단계 가중, 고의 II단계 상당 조치)         -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 고발(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감규정 세칙(별표1, Ⅲ.6)
	• 과징금 최대 50% 가중(외부감사법)	• 외감규정(별표7)
	•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2 가산(자본시장법)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행정조치 (감사인)	<ul> <li>(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 고발</li> <li>(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 고발, 직무정지 건의 1년</li> </ul>	• 외감규정 세칙(별표, Ⅲ.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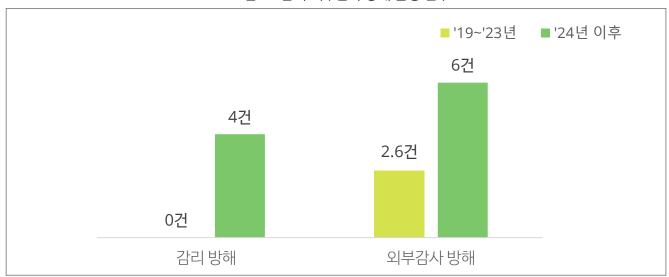
※ 조사를 수행하는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등 벌칙 외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조치를 병과하고 있음

<sup>4)</sup>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표 5> 조치사례

구분	조치사례요약					
	• 허위자료제출	• 과징금 가중(부과비율 4%→6%, 2%p ↑ (+0.7억원)) 및 검찰 고발				
감리방해	• 자료제출 거부	• 과징금 가중(과징금 가중 15% ↑ (+35.7억원)) 및 검찰통보				
	• 자료 지연제출	• 과징금 가중(부과비율 4%→6%, 2%p ↑ (+2.2억원)) 및 검찰통보 대상 추가				
01H7F11	• 허위자료 제출	• 검찰 고발				
외부감사 방해 	•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 검찰 고발				



#### 중대한 회계위반 및 외부감사·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

#### 시사점

- □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음 <sup>5)</sup>
  -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최대 10억원→최대20억원)으로 상향함
  - 회계 부정 신고 건수는 2019년에 8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5월까지는 72건을 기록 중임
  -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억76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억 5,000만원을 넘었음
  -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



-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 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고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었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7억원에 달함.
- □ 금융감독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2025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4

#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 요약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함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함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하여, 5개 세부·보완 확대 항목을 설정· 추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배경

- □ 건전한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Value-up) 및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국내 은행권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당국 또는 업계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선진적 지배구조 도입·정착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금융사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승계절차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가동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운영하는 해외 유수 금융사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마련함 <sup>1)</sup>
  - 모범관행은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되, 은행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선택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

□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며, 주요 항목에 있어 개선효과가 있었음

<표 1> 모범관행 도입 성과

구분	목표	기존	개선현황
CEO 선임· 경영승계절차	• 후보군 관리·육성·선정을 포괄하는 공정·투명한 승계계획	<ul> <li>종합적 승계계획· 문서화 미흡</li> <li>평가·검증기간 단기 (평균 50일)</li> </ul>	<ul> <li>경영승계절차 구체화·문서화</li> <li>최소 3개월 前 개시</li> </ul>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 금융회사별특성등에 맞는 구성을통한이사회기능강화	<ul> <li>일부 분야 편중 등 전문성·다양성 부족</li> <li>Board Skill Matrix 등 관리체계 미비</li> </ul>	• Board Skill Matrix 도입·운영을 통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추진중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 이사회 등 활동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고 재선임과 연계	<ul> <li>자기평가 등으로 관대화 경향</li> <li>평가기준의 다양성· 구체성 미흡</li> </ul>	<ul> <li>자기평가 비중 조정, 외부평가 확대</li> <li>정량평가 확대, 정성평가 다양화·구체화</li> </ul>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 이사회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ul> <li>CEO 산하이사회 지원조직</li> <li>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li> </ul>	<ul> <li>이사회 산하 설치, 이사진이 임면·평가</li> <li>금융연수원과 4개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 1)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

- □ 상시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공정·투명한 승계계획을 내규 등에 마련하도록 함
  - 모든 지주·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 등을 개정함
  - 일부 지주·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2주~1개월)을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보다 강화됨



####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 2)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 제고

- □ 지주·은행은 모범관행을 참고하여 각사의 규모, 복잡성, 리스크 특성 등에 맞는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BSM의 작성·관리·활용방법 등을 신설하고 KB지주 등은 전문분야, 성별 등 다양성 목표를 정함
  - 현재 모범관행 도입 초기 단계로, 실제 이사회 구성 변화 등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평가 관리해 나갈 예정임

#### 3)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 □ 평가주체별(자기·동료·임직원) 비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및 외부기관 활용 등을 통해 평가의 다양화·객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기평가 비중이 9.7%p 감소(18.4%→8.7%)하였고, 외부기관 평가점수를 사용하는 회사가 6개(1개→6개)로 증가함
  - 정량평가 비중 7%p 상승(16.4%→23.4%), 정성평가 문항·배점 세분화 등을 통해 기준을 다양하고 명확하게 개선 중임

#### 4)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 □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사외이사 교육·연수를 강화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주·은행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설치하였고, 이사회가 지원조직을 임면·평가하도록 함
  - 이사회 지원조직 평균 인원수(2025년 4월 기준): 지주 3.5명, 은행 3.2명
  -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당국·은행권·금융연수원은 MOU를 체결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신임·재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함 2)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 금융당국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 □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사외이사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주 은행별로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맞고 있는 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정기적(매반기)으로 실시하고 있음
  - 간담회를 통해 ① 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②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③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사외이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함

#### 향후 계획

- □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 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함
- □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독립성 제고는 기존 사외이사 임기정책 금융환경 변화 등과 연동하여 중장기적 목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하여,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 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Digital Governance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임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I Audit & Assurance by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I Strategy, Risk & Transactions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I Audit & Assurance ignohighed junohighed junoh



유민지 파트너

Partner I Audit & Assurance minjyoo@deloitte.com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a href="https://www.deloitte.com/about">www.deloitte.com/about</a>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